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617호 2021. 8. 2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75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54-1번지(변경 전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이훈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54-1번지
 - 나. 대지면적 : 45,73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4,028.4014㎡ (지하 2층, 지상 28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9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359,00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10. ~ 2021. 8. 31.
5. 변경사항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 내역 붙임 참조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 내역 1부. 끝.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내용(8차) 】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BL	인천 서구 당하동 1254-1	변 경
대지면적	45,732.000㎡	45,732.000㎡	변경없음
건축면적	6,404.0042㎡	6,404.0042㎡	변경없음
연 면 적	143,911.6847㎡ (지상:98,306.9825 / 지하:45,604.7022)	144,028.4014 ㎡ (지상:98,306.9825 / 지하:45,721.4189)	지하층 면적 116.7167㎡ 증가
건 폐 율	14.00%	14.00%	변경없음
용 적 륜	214.96%	214.96%	변경없음
주차대수	1,185대 (지하:182대, 지상:3대)	1,185대 (지하:182대, 지상:3대)	변경없음
조경면적	18,877.4100㎡ (41.28%)	20,307.2300㎡ (44.11%)	1,429.82㎡(2.83%) 면적 증가
세대수/규모	936세대 / 지하2층, 지상28층	936세대 / 지하2층, 지상28층	변경없음

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서(8차)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건축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1	- 동번호 변경 (101,102,103,104,105,106,107,108,109동)	- 동번호 변경 (1101,1102,1103,1104,1105,1106,1107,1108, 1109동)	- 검단신도시 블록별 단지번호 지정 인천광역시 주택과-18887(21.5.17)	
2	- 태기전	- 전재식	- 대표자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3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6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54-1	- 지번 상세주소 지정	
4	- 연면적 143,911.6847㎡	- 연면적 144,028.4014㎡(+116.7167㎡)	- 지하층 및 부대시설 오류 면적 정정 (도서는 기반영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5	- 단지배치도 옥외자전거 보관소 1101동 : 15개소 1109동 : 10개소 - 주차장 부출입구	- 단지배치도 옥외자전거 보관소 상호 이동 1101동 : 10개소 1109동 : 15개소 - 주차장 부출입구 지붕 추가	- 1101동 토목 맨홀 간섭 - 차량소음 세대 전달 저감 / 우수유입 차단을 위한 변경	
6	- 출입문 폭 : 800mm - 15인승 승강기 출입문 폭 : 1,000mm (1103, 1105, 1106동) - 장애인보행동선	- 출입문 폭 : 900mm (상시개방문 점자블럭 삭제) - 15인승 승강기 출입문 폭 : 900mm (1103, 1105, 1106동) - 옥외승강기 관리사무소 이동 동선 확보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7	- 단위세대 욕실 전개도	- 욕실 전개도 중 세면대 형상 84형	- 모델하우스 기준 반영	
8	- 단위세대 주방 상세도	- 주방 입면 약세서리 및 주방TV 위치 이동	- 모델하우스 기준 반영	
9	- 실내외 재료 마감표	- 마감재료 일부 변경	- 마감재 상향	
10	- 엘리베이터 출입구 형상 : 직각 - 발코니, 욕실 드레인 - 84형 위생도기 형상 : 라운드형	- 엘리베이터 출입구 형상 : 경사 - 발코니, 욕실 드레인 위치 및 형상 변경 - 84형 위생도기 형상 : 각형	- 사용 성능 개선 - 사용 성능 개선 - 단순 표기 오류	
11	- 1101동 폐쇄형 점검구 (A-502) - 지하2층 트렌치, 집수정 (A-501, 511, 521, 531, 541) - 1103동 피트니스 방풍실 (A-522) - 1104동 지하1층 A코어 통신실 (A-532) - 1105동 지하1층 방풍실 (A-542) - 1104, 1106동 지하1층 우수저류조 개구부 (A-532, 552)	- 1101동 폐쇄형 점검구 위치이동 (A-502) - 지하2층 트렌치, 집수정 설치 위치변경 (A-501, 511, 521, 531, 541) - 1103동 피트니스 방풍실 점자블럭 추가 (A-522) - 1104동 지하1층 A코어 통신실 출입문 개폐방향 수정 (A-532) - 1105동 지하1층 방풍실 블록벽, 점검구 누락 수정 (A-542) - 1104, 1106동 지하1층 우수저류조 개구부 축소 (A-532, 552)	- 사용 성능 개선 - 유지관리 성능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 사용 성능 개선 - 단순 표기 오류 - 유지관리 성능 개선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12	- 지하2층 면적 : 21,479.1699㎡	- 지하2층 면적 : 21,511.7302㎡ (+32.5603㎡)	- 우수관리실 진입구간 면적오류 정정 (도서는 기반영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 지하1층 면적 : 20,829.2016㎡	- 지하1층 면적 : 20,827.4851㎡ (-1.7165㎡)	- 기존 주차장 -33.7874 감소 (북카페 18.7907㎡ + 피트14.9967㎡)	
	- 지하주차장 합계 : 42,308.3715㎡	- 지하주차장 합계 : 42,339.2153㎡ (+30.8438㎡)	(도서는 기반영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13	- 북카페 면적 : 110.1028㎡	- 북카페 면적 : 177.0692㎡ (+66.9664㎡)	- 구획변경에 따른 세부실 면적 정정 (도서는 기반영 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 작은도서관 면적 : 194.9310㎡	- 작은도서관 면적 : 189.4437㎡ (-5.4873㎡)	- 북카페 구획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18.7907㎡)	
	- 키즈카페 면적 : 83.7086㎡	- 키즈카페 면적 : 83.7086㎡ (변경없음)		
	- 독서실 면적 : 245.6282㎡	- 독서실 면적 : 204.9056㎡ (-40.7226㎡)		
	- 공용부(화장실)면적 : 64.9123㎡	- 공용부(화장실)면적 : 62.9465㎡ (-1.9658㎡)		
	- 118동 면적 합계 : 699.2829㎡	- 118동 면적 합계 : 718.0736㎡ (+18.7907㎡)		
14	- 근생2 면적 : 260.4166㎡	- 근생2 면적 : 259.2286㎡ (-1.1880㎡)	- 면적오류 정정 (도서는 기반영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 화장실 면적 : 45.6955㎡	- 화장실 면적 : 47.3860㎡ (+1.6905㎡)		
	- 소방펌프실 면적 : 32.5839㎡	- 소방펌프실 면적 : 32.5839㎡ (변경없음)		
	- 근생2 면적 합계 : 338.6960㎡	- 근생2 면적 합계 : 339.1985㎡ (+0.5025㎡)		
15	- 우수관리실 면적 : 127.3591㎡	- 우수관리실 면적 : 194.4342㎡ (+67.0751㎡)	- 면적오류 정정 (도서는 기반영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16	- 피트니스 면적 : 1,131.0586㎡	- 피트니스 면적 : 1,130.5632㎡ (-0.4954㎡)	- 면적오류 정정 (도서는 기반영되었으나 면적 기재 오류)	
17	- 점자블럭	- 점자블럭 위치 및 수량 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 1101동 지상2층 노유자시설 지붕 (A-504)	- 1101동 지상2층 노유자시설 지붕 트랜치 추가(A-504)	- 배수성능 향상 및 고정하중 증가 방지	
	- 1103, 1105, 1106동 지상1층 계단실 (A-523, 543, 553)	- 1103, 1105, 1106동 지상1층 계단실 단수 1단 삭제(A-523, 543, 553)	- 단순 표기 오류	
	- 1105동 지하1층 계단실 외부창 (A-542)	- 1105동 지하1층 계단실 외부창 삭제 (A-542)	- 단순 표기 오류	
- 1102 ~ 1109동 지붕층 (A-518, 528, 538, 548, 558, 568, 578, 588)	- 1102 ~ 1109동 지붕층 트랜치 설치 (A-518, 528, 538, 548, 558, 568, 578, 588)	- 배수성능 향상 및 고정하중 증가 방지		
18	- E/V 홀 P/J창 위치	- E/V 홀 P/J창 위치 좌우 반전	- 단순 표기 오류 (창호도와 입면도 불일치)	
19	- 자동문 형상	- 자동문 형상 변경	- 실시공 상세 반영	
20	- E/V PIT 집수정 위치 : 중앙	- E/V PIT 집수정 위치 : 우측 이동	- 단순 표기 오류	
21	- 기계실 바닥 : 무근콘크리트	- 기계실 바닥 : 시멘트몰탈		
	- E/V PIT 방수	- E/V PIT 방수 삭제		
	- 최하층 승강로 바닥 : T30단열재/ 배수판/ 무근콘크리트/ 지정마감	- 최하층 승강로 바닥 : THK45단열배수판/ 시멘트몰탈/ 지정마감	- 유지관리 성능 개선	
	- 집수정 규격 : 300 x 300	- 집수정 규격 : 500 x 500		
22	- PD 0.9 x 2.1	- PD 0.9 x 2.1 형상 분할형 변경	- 실시공 모델하우스 기준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23	- 필로티 고정창 : T8 - 지상1층 주출입구 자동문	- 필로티 고정창 : T5 - 지상1층 주출입구 자동문 형상 변경	- 단순 표기 오류 - 창호 제작자 기준 창호도 적용	
24	- 주차규격 일반형 : 2.3 x 5.0 확장형 : 2.5 x 5.1 - 집수정 및 트랜치 - 장애인 주차구역 이동동선	- 주차규격 일반형 : 2.5 x 5.0 확장형 : 2.6 x 5.2 - 집수정 및 트랜치 수정 - 장애인 주차구역 이동동선(1.2m) 확보	- 단순 표기 오류 - 성능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25	- 경로당 방풍실 점자블럭 : 2개 - 어린이집 방풍실 점자블럭 : 2개	- 경로당 방풍실 점자블럭 : 3개 - 어린이집 방풍실 점자블럭 : 6개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26	- 경로당 및 어린이집 현관문	- 경로당 및 어린이집 현관문 형상 변경	- 성능 개선	
27	- 경비실2 입면도	- 경비실2 입면도 변경	- 디자인 특화 설계 적용	
28	- 방풍실 점자블럭 : 2개 - 관리사무소 출입구, 화장실	- 방풍실 점자블럭 : 3개 - 관리사무소 출입구, 화장실 점자블럭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29	- 화단 단면도 : 골조	- 화단 단면도 : 블록 쌓기	- 토목 상세도 반영	
30	- AD1 대칭문	- AD1 비대칭문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31	- 창호 규격 높이 : 2,600mm	- 창호 규격 높이 : 2,700mm	- 근생 천정고와 창호 높이 불일치로 인한 마감 향상	
32	- 출입문 점자블럭 : 2개	- 출입문 점자블럭 : 3개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33	- AD5, AD6, AD6-1 대칭문	- AD5, AD6, AD6-1 비대칭문	-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 (개정2018.05) 적용	
34	- 필로티 인접세대 바닥 단열 범위	- 필로티 인접세대 바닥 단열 범위 확대/ 벽체 단열 연결	- 단열범위 확대 및 단열단절구간 연결 통한 냉교 해소	
35	- 창쪽열림 방향	- 창쪽열림 방향 평면도 기준 수정	- 창쪽 열림방향 모델하우스 기준 실시공, 도면 수정	
36	- 자동문 입면	- 자동문 입면 창호도 기준 적용 변경	- 실시공 창호도 기준 변경	
37	- 세대 현관문 상세도	- 방화문 제작자 사양 적용	- 방화문 세부 제작 상세도 기준 변경	
38	- 폐쇄형 점검구	- 폐쇄형 점검구 제작 상세도 변경	- 점검구 세부 제작 상세도 기준 변경	

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서(8차)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조경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39	- 조경식재/시설물/포장 계획 총괄	- 조경 식재/시설물/포장 계획 총괄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0	- 조경식재/시설물/포장 계획 총괄 수량	- 조경 식재/시설물/포장 계획 총괄 수량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1	- 조경 면적 : 19,334.08㎡(42.28%) - 자연지반조경 면적 : 8,662.88㎡(126.28%) - 식재 면적 : 19,334.08㎡(281.85%)	- 조경 면적 : 20,307.23㎡(44.11%) - 자연지반조경 면적 : 9,517.36㎡(138.74%) - 식재 면적 : 20,241.63㎡(295.31%)	- 단지 공간 특화에 따른 조경 면적 증가	
42	- 생태면적률 : 18,294.40㎡(40.00%)	- 생태면적률 : 18,338.69㎡(40.10%)	- 조경 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맞는 정격제품 사용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43	- 교육 : 1,535주(1,076주) - 관목 : 7,000주	- 교육 : 3,743주(2,571주) - 관목 : 121,100주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4	- 수경시설 : 1식 - 앉음벽 : 5개소 - 원형플랜터 : 1개소 - 사각플랜터 : 7개소 - 장식가벽 : 1식 - 조형물 : 1식 - 텃밭 : 1개소 - 화계 : 1식 - 맘스레이션 : 1개소 - 파고라 : 5개소 - 평의자 : 15개소(파고라하부) - 등의자 : 25개소 - 야외테이블 : 12개소 - 수목보호호출덮개 : 18개소 - 벽면녹화 : 1식	- 수경시설 : 1식 - 앉음벽A~D : 18개소 - 원형플랜터 : 1개소 - 사각플랜터A, C : 5개소 - 장식가벽A,B : 6개소 - 텃밭 : 1개소 - 계단 : 1식 - 파고라A,B : 4개소 - 티하우스A,B : 2개소 - 맘스레이션 : 1개소(건축공사분) - 등의자 : 32개소 - 라탄벤치 : 4개소 - 야외테이블 : 12개소 - 장식품 : 5개소 - 수목보호호출덮개 : 6개소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5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4,227.03㎡ - 고무칩포장 : 94.22㎡ - 부정형판석포장 : 68.33㎡ - 칼라콘크리트포장 : 118.49㎡ - 데크포장 : 1식 - 디딤석 놓기 : 103.19㎡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4,575.11㎡ - 부정형판석포장 : 295.71㎡ - 데크포장 : 724.28㎡ - 디딤석 놓기 : 107.03㎡ - 녹지경계석 : 2,223.9m - 재료분리경계석 : 25.3m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6	- 파고라 : 1개소 - 평의자 : 3개소(파고라 하부) - 조합놀이대A : 1개소 - 단위놀이시설 : 1개소 - 흔들놀이대 : 3개소 -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고무칩포장 : 566.49㎡	- 파고라B : 2개소(하부의자 포함) - 조합놀이대A : 1개소 - 2인그네A : 1개소 - 흔들놀이대A~C : 각1개소 - 회전놀이대 : 1개소 - 시소 : 2개소 -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고무칩포장 : 566.49㎡ - 녹지경계석 : 67.0m - 재료분리경계석 : 31.4m - 배수관 : 5.1m - 원형수로관 : 46.4m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앓음벽 : 1개소 - 원형플랜터 : 2개소 - 파고라 : 1개소 - 평의자 : 3개소(파고라 하부) - 야외테이블 : 3개소 - 조합놀이대B : 1개소 - 단위놀이시설 : 1개소 - 흔들놀이대 : 3개소 -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고무칩포장 : 785.76㎡ - 데크포장 : 1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앓음벽 : 1개소 - 원형플랜터 : 2개소 - 파고라B : 2개소(하부의자 포함) - 야외테이블 : 3개소 - 조합놀이대B : 1개소 - 2인그네B : 1개소 - 흔들놀이대D~F : 각1개소 - 단위놀이시설A : 1개소 - 짚라인 : 1개소 -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고무칩포장 : 785.75㎡ - 데크포장 : 118.41㎡ - 녹지경계석 : 50.8m - 재료분리경계석 : 63.6m - 배수관 : 14.3m - 원형수로관 : 20.0m - 빗물받이 : 2EA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고라 : 1개소 - 평의자 : 3개소(파고라 하부) - 유아용조합놀이대 : 1개소 - 흔들놀이대 : 3개소 -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32.00㎡ - 고무칩포장 : 7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고라B : 2개소(하부의자 포함) - 유아용조합놀이대 : 1개소 - 흔들놀이대G~I : 각1개소 - 유아용그네 : 1개소 -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32.8㎡ - 고무칩포장 : 121.51㎡ - 녹지경계석 : 32.8m - 재료분리경계석 : 17.0m - 배수관 : 3.0m - 원형수로관 : 14.4m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앓음벽 : 1개소 - 파고라 : 1개소 - 평의자 : 3개소(파고라 하부) - 배드민턴장 : 1개소 - 체력단련시설A~C : 각1개소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154.41㎡ - 인조잔디포장 : 14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고라B : 2개소(하부의자 포함) - 다목적구장 : 1개소 - 체력단련시설A~C : 각1개소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278.58㎡ - 인조잔디포장 : 160.00㎡ - 녹지경계석 : 106.7m - 재료분리경계석 : 52.0m - 배수관 : 22.0m - 원형수로관 : 29.0m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서(8차)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조경, 기계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50	- 사각플랜터 : 1개소 - 파고라 : 1개소 - 평의자 : 3개소(파고라 하부) - 배드민턴장 : 1개소 - 체력단련시설A~D : 각1개소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99.72㎡ - 인조잔디포장 : 149.24㎡	- 사각플랜터B : 1개소 - 파고라B : 1개소(하부의자 포함) - 배드민턴장 : 1개소 - 체력단련시설D~G : 각1개소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96.16㎡ - 인조잔디포장 : 149.24㎡ - 녹지경계석 : 49.0m - 재료분리경계석 : 25.1m - 원형수로관 : 16.4m	- 단지 마감 상황 및 하자방지에 따른 변경	
51	- 판형열교환기 용량 CHE-1(난방):910,000[kcal/hr] (급탕):330,000/330,000[kcal/hr] CHE-2(난방):900,000[kcal/hr] (급탕):310,000/310,000[kcal/hr] CHE-3(난방):750,000[kcal/hr] (급탕):290,000/290,000[kcal/hr] CHE-4(난방):880,000[kcal/hr] (급탕):310,000/310,000[kcal/hr]	- 판형열교환기 용량 변경 CHE-1(난방):960,000[kcal/hr] (급탕):335,000/335,000[kcal/hr] CHE-2(난방):950,000[kcal/hr] (급탕):310,000/310,000[kcal/hr] CHE-3(난방):790,000[kcal/hr] (급탕):282,000/282,000[kcal/hr] CHE-4(난방):930,000[kcal/hr] (급탕):302,000/302,000[kcal/hr]	- 열사용시설기준 제8조,12조에 따라 난방부하 및 설비용량 변경	
	- 난방,급탕순환펌프 유량 P-3(난방):1,170[l/min] P-4(난방):1,170[l/min] P-5(난방):960[l/min] P-6(난방):1,140[l/min] P-7(급탕):110[l/min] P-8(급탕):105[l/min] P-9(급탕):100[l/min] P-10(급탕):105[l/min]	- 난방,급탕순환펌프 유량 변경 P-3(난방):1,281[l/min] P-4(난방):1,266[l/min] P-5(난방):1,053[l/min] P-6(난방):1,239[l/min] P-7(급탕):112[l/min] P-8(급탕):103[l/min] P-9(급탕):94[l/min] P-10(급탕):101[l/min]	- 열사용시설기준 제21조에 따라 펌프유량 변경	
	- 동 지하 배수펌프 수량 P-13:21(EA)	- 동 지하 배수펌프 수량 변경 P-13:22(EA)	- 건축도면 집수정 수량에 따른 수량 변경	
	- E/V 배수펌프 수량 P-14:19(EA)	- E/V 배수펌프 수량 변경 P-14:17(EA) - 옥외E/V용 2EA 삭제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상 비상용 E/V에만 배수펌프 설치가능. 옥외 E/V는 비상용 아님.	

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서(8차)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기계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52	- 영구 배수펌프 수량 P-16:5×2(EA)	- 영구 배수펌프 수량 변경 P-16:7×2(EA)	- 건축도면 집수정 수량에 따른 수량 변경	
	- 오배수 패키지펌프 누락 관리사무소,북카페,피트니스,근생2용) - 빗물가압펌프 및 근생피트배수펌프 누락	- 오배수 패키지펌프 추가 (P19~P26) - 빗물가압펌프 및 근생피트배수펌프 추가 (P27~P28)	- 도면 보완(추가)	
53	- 지하주차장 급배기헬 형식 F-3,4:SIROCCO	- 지하주차장 급배기헬 형식 변경 F-3,4:AXIAL	- 헬의 내열성 만족을 위해 형식 변경	
	- 헬 수량 오류(부속동,주민시설) F-5:37(EA), F-6:13(EA)	- 헬 수량 변경 F-5:35(EA), F-6:17(EA)	- 수량 오류 수정	
	- 운동시설 샤워실 락카(남),(여) 급배기헬 풍량 F-7:470(m3/hr), F-8:380(m3/hr)	- 운동시설 샤워실 락카(남),(여) 급배기헬 풍량 변경 F-7:690(m3/hr), F-8:700(m3/hr)	- 적절한 환기량으로 풍량 변경	
	- E/V 기계실 배기헬 수량 F-10:2(EA)	- E/V 기계실 에어컨 설치로 배기헬 F-10 삭제	- 냉방효과 높은 에어컨 설치로 배기헬 삭제	
	- 빗물#2 관리층,펌프실 급배기용 헬 F-11:17(EA)	- 빗물#2 관리층,펌프실 급배기용 헬 F-11 삭제	- 빗물이용시설에 별도 포함	
	- 소화 펌프실 급배기용 헬 장비번호:F-12	- 소화 펌프실 급배기용 헬 장비번호:F-12→F-10 변경	- 장비번호 변경	
	- 운동시설 화장실 배기헬 누락	- 운동시설 화장실 배기헬 추가(F-11)	- 효율적 시설관리 및 적절한 환기를 위해 보완	
	- 주차장 무덕트 유인헬 수량 .51(EA)	- 주차장 무덕트 유인헬 수량 변경 .113(EA)	-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수량 변경	
	- 기수분리기+팽창탱크 설치	- 팽창기수분리기 설치 및 용량 변경	- 성능향상 및 효율적 장비관리를 위하여 장비 형식 및 용량 변경	
54	- 저수조(기동간섭부위 미고려)	- 저수조 형상 변경 (기동간섭부위 반영)	- 도면 수정 (기동간섭부위 반영)	
	- 전기운수기 수량:2(EA)	- 전기운수기 수량:5(EA)	- 수량 오류 수정	
	- 전기방열기 ER-2 설치	- 전기방열기 ER-2 삭제	- 수량 오류 수정	
	- 지하1,2층 E/V 홀 제습기 없음	- 지하1,2층 E/V 홀 제습기 설치	-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보완	
55	- 위생기구 수량 오류	- 위생기구 수량 수정	- 수량 오류 수정	
56	- 없음	- 부대시설 및 E/V기계실 냉난방기 반영	-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보완	
57	- 상수도,지역난방 인입경로	- 상수도 인입경로 변경	- 상수도사업소, 청라에너지 협의에 따라 인입경로 변경	
	- 근생 수도계량기 1개소	- 근생1,근생2 수도계량기 분리, 2개소	- 상가 입주민 분쟁방지 및 편의를 위해 분리	
	- 조경용 QC밸브, 조경배수구 미반영	- 조경용 QC밸브, 조경배수구 반영	- 조경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보완	
	- 재활용품 보관소 세정대 미반영	- 재활용품 보관소 세정대 반영	- 입주민 편의를 위해 시설보완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58	- 장비 및 배관 경로 - 판형 열교환기 및 난방순환펌프 용량, 밸브 스케줄 등	- 장비 및 배관 경로 변경 - 판형 열교환기 및 난방순환펌프 용량, 밸브스케줄 등 변경	- 현장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관경로 변경 - 열사용시설기준 제8조,12조,21조에 따라 장비용량, 밸브 스케줄 등 변경	
59	- 장비 및 배관 경로 - 판형 열교환기 및 급탕순환펌프 용량, 밸브스케줄 등 - 없음	- 장비 및 배관 경로 변경 - 판형 열교환기 및 급탕순환펌프 용량, 밸브스케줄 등 변경 - 정수처리시설 추가	- 현장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관경로 변경 - 열사용시설기준 제8조,12조,21조에 따라 장비용량, . 밸브스케줄 등 변경 - 입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시설보완	
60	- 없음	- 빗물펌프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추가	- 도면 보완(추가)	
61	- 확장세대의 경우 기본옵선세대 기준 도면만 있음 - 드레스룸 등 코일누락부위 있음	- 확장세대의 경우 옵션별 (알파룸, 드레스룸 등) 도면 구분하여 작성 - 드레스룸 등 코일누락부위 보완	- 옵션별 세부도면 보완 - 도면 보완(추가)	
62	- ELV. 기계실 에어컨 없음 (배기환 적용)	- ELV. 기계실 에어컨 설치	-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냉방시설 보완	
63	- 배관 경로	- 배관 경로 변경	- 현장 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관경로 변경	
64	- 경비실1,2 화장실 방열기(ER-1) 평면 없음 - 경비실1 난방판넬 없음	- 경비실1,2 화장실 방열기(ER-1) 도면 보완 - 경비실1 난방판넬 추가	- 도면 보완(추가) -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	
65	- 없음	- 부대시설 냉난방배관 평면도 추가 (경비실,어린이집,관리소,피트니스)	- 도면 보완(추가)	
66	- 단위세대 기본형 도면 있음 - 이중관 위생배관 경로 및 손빨래, 세탁수전 위치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관 관경:D75(MM) - 1,2,최상층 수도계량기 열선 미설치	- 단위세대 기본형 도면 삭제 - 이중관 위생배관 경로 및 손빨래, 세탁수전 위치 변경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관 관경:D100(MM) - 1,2,최상층 수도계량기 열선 설치	- 기본형 신청세대 없음 - 원활한 급수 및 간섭고려 - 원활한 배수 고려 -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	
67	- 배관 경로	- 배관 경로 변경	- 현장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관 경로변경	
68	- 배관 경로 - 조경용 QC밸브 및 재활용품 보관소용 세정대 급수배관 및 조경배수배관 누락 - 집수정위치 변경에 따른 펌프 및 배관 위치	- 배관 경로 변경 - 조경용 QC밸브 및 재활용품 보관소용 세정대 급수배관 및 조경배수배관 추가 - 집수정위치 변경에 따른 펌프 및 배관 위치 변경	- 현장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관경로 변경 - 도면 보완(추가) - 도면 보완(추가)	
69	- 없음	- 부대시설 위생배관 평면도 추가 (어린이집,관리소,피트니스)	- 도면 보완(추가)	
70	- 없음	- 근생 위생배관 평면도 추가 (근생1,근생2)	- 도면 보완(추가)	
71	- 없음	- 경비실 위생배관 평면도 추가	- 도면 보완(추가)	
72	- 가스 인입경로 - 배관 경로	- 가스 인입경로 변경 - 배관 경로 변경	- 인천도시가스공사 협의에 따라 인입경로 변경 - 현장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관경로 변경	
73	- 확장세대의 경우 기본옵선세대 기준 도면만 있음 - 배관 경로	- 확장세대의 경우 옵션별(알파룸,팬트리 등) 도면 구분하여 작성 - 배관 경로 변경	- 옵션별 세부도면 보완 - 원활한 환기 및 간섭 고려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74	- 유인철편 대수:52대(지하1층)	- 유인철편 대수 변경:53대(지하1층)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	
	- 유인철편 대수:59대(지하2층)	- 유인철편 대수 변경:60대(지하2층)		
	- 지하1,2층 E/V 홀 제습기 없음	- 지하1,2층 E/V 홀 제습기 설치	-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보완	
75	- 부대시설 환기덕트 평면도 없음 (어린이집,관리사무소,피트니스, 근생1,2, 경비실)	- 부대시설 환기덕트 평면도 보완 (어린이집,관리사무소,피트니스, 근생1,2, 경비실)	- 도면 보완(추가)	
76	- 없음	- 헬름 확대 덕트 평면도 도면 보완	- 도면 보완(추가)	
77	- 없음	- 단위세대 선냉매배관 도면 보완	- 도면 보완(추가)	
78	- 물탱크 형상 및 배관, 점검구 위치	- 물탱크 형상 및 배관, 점검구 위치 변경	- 기동 간섭부위 반영하여 물탱크 형상 변경, 효율적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배관, 점검구 위치 변경	
79	- 입상배관 배치	- 입상배관 배치 변경	- 현장여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치 변경	
80	- 없음	- 열선배관 평면도 보완	- 도면 보완(추가)	
81	- 자동제어 계통도 일부만 있음	- 자동제어 시스템구성도, 계통도, 일람표, 평면도 보완	- 도면 보완(추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서(8차)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토목,전기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82	- 우수 외부배출 : 1개소 - 우수관로 - 우수맨홀 D900mm : 8개 D1200mm : 8개 D1500mm : 10개 - 보차혼용도로 우수배수 : 집수정+트렌치	- 우수 외부배출 : 2개소 - 우수관로 선형변경 - 우수맨홀 D900mm : 31개 D1200mm : 2개 - 보차혼용도로 우수배수 : 원형수로관	- 단지내 우수배출 성능 향상 - 우수배출 2개소 확보에 의한 관로변경 반영 - 우수배수 성능 향상 및 미관개선	
83	- 우수관로 - 우수맨홀 D900mm : 28개 D700mm : 14개	- 우수관로 선형변경 - 우수맨홀 D900mm : 30개 D700mm : 47개	- 건물 우수배출 확정에 의한 변경 반영	
84	- 외등 램프 규격 : 메탈할라이드 - 외등 수량 : 14개	- 외등 램프 규격: LED - 외등 수량 : 72개	- 램프변경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수량변경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증가	
85	- 변압기 용량: 900,800,900KVA - 발전기 용량: 750KW	- 변압기 용량 : 1000,1250,1250KVA - 발전기 용량 : 1200KW	- 부하 증가에 따른 변압기, 발전기 용량 증가	
86	- 조명기구 사양 : FPL, EL - 일괄소등스위치 위치: 현관옆	- 조명기구 사양: 전체 LED - 일괄소등스위치 위치: 현관앞 복도쪽	-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반영	
87	- 세대분전반 메인차단기 50AF/30AT - 회로 : 전등1, 전열4	- 세대분전반 메인차단기 50AF/50AT - 회로 : 전등1,전열7	- 용량증가, 옵션세대 에어컨회로 증가 - 콘센트 위치는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변경	
88	- 없음	- EE-301 101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02 101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서(8차)

■ 사업명 : 검단신도시 AB6BL 공동주택 신축공사(토목,전기분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사유)	비고
89	- 없음	- EE-311 102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12 102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0	- 없음	- EE-320 103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21 103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1	- 없음	- EE-329 104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30 104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2	- 없음	- EE-338 105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39 105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3	- 없음	- EE-347 106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48 106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4	- 없음	- EE-356 107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57 107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5	- 없음	- EE-365 108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66 108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6	- 없음	- EE-374 109동 지하2층 전기설비평면도 - EE-375 109동 지하1층 전기설비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7	- EE-501~504 조명기구 사양 : FL, EL 조명기구 배치, 분전반 설치위치	- EE-706 ~709 조명기구 사양: 전체 LED 조명기구 사양변경에 따른 배치 변경, 분전반 위치 일부 변경	- 고효율기자재인 LED로 변경 - 타입변경에 따른 조명기구 배치 변경, - 분전반 위치변경은 현장여건(건축마감) 고려	
98	- 없음	- EE-710 경비실1,2 전등설평면도	- 도면 보완(추가)	
99	- 옥외 CCTV 카메라 수량: 6개	- 옥외 CCTV 카메라 수량: 41개	- CCTV 수량 증가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100	- 통신수구 수량 74A(확장형): 6개, 74B(확장형): 6개 84A(확장형): 6개, 84B(확장형): 6개	- 통신수구 수량 74A(확장형): 9개, 74B(확장형): 8개 84A(확장형): 9개, 84B(확장형): 9개	- 안방, 알파룸 입주자 편의를 위해 통신수구 증가	
101	- 일괄소등스위치 위치: 현관 - "NOTE" 7번 거실동체감지기 1,2층 최상층 제외	- 일괄소등스위치 위치: 현관 앞 복도쪽 - "NOTE" 7번 거실동체감지기 전세대	- 모델하우스 설치 기준으로 위치 변경. - NOTE 수정 - 표기오류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17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8.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8-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9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17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호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2-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4-1 (원창동)	20171025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3-15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호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9-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8번길 12 (석남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3.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45-2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7번길 7 (경서동)	20200629	금산로의 시작점에서부터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08번길 11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1,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2-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3-7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호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8-2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86 (가좌동)	건물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크라운제과 인천명업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475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자치법규 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 또는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법」과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누락된 4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감면대상자를 전부 열거하는 방식으로 각 조문별로 개정함.
- 나. 법령 상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의무감경율(50%)이상이 되도록 정비
- 다. 누락된 공연장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
- 라.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 적용
 - 자치법규 간 동질성 및 관련성(동일한 개정목적)이 있는 경우 일괄 개정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032)560-4062, 팩스 560-2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담당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치법규 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 또는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법」 과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누락된 4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감면대상자를 전부 열거하는 방식으로 각 조문별로 개정함.
- 나. 법령 상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의무감경율(50%)이상이 되도록 정비
- 다. 누락된 공연장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
- 라.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 적용
- 자치법규 간 동질성 및 관련성(동일한 개정목적)이 있는 경우 일괄개정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0조의2(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을 “등록장애인,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단서 중 “50 범위 안에서”를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 감면) ①·② (생략)</p> <p>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p>	<p>제9조(사용료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④ ~ ⑦ (생략)

<신설>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5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신 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8. (생 략)

14.·15.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용은 중복 되어서는 안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입장료 감면)-----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u></p> <p>가.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나.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u></p> <p>다.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p> <p>라.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u>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u>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국가유공자</p> <p>3.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독립유공자</p> <p><신설></p>	<p>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등록장애인, 노인</u>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u>해당하는 사람에게는</u>----- ----50을-----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3.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u></p>

<신 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 6. (생략)

10. ~ 12.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법제처 2016.2.2. 의견제시 16-0020

Q) 00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00군의 시설 방문 시 00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각종 시설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일괄개정이 가능한지?

A)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00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으로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의 측면에서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